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7일, 맹성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2024.11.1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4.12.3.)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12.23.)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맹성규)

현행법은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 금지 규정을 두어 승차권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승차권을 구매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승차권의 부정판매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판매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가 이루어지는 민간거래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는 형벌과는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부과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승차권 부정판매 근절 및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곽현준)

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의무 위반자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안 제47조의2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의2¹⁾에서는 철도사업자 또는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승차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임.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1)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나.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4호	500

현행	개정안
<신설>	제47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검토의견

최근 철도 승차권 부정판매를 비롯한 암표 거래는 불특정 다수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음. 더욱이 컴퓨터에서 여러번 입력해야 실행되는 과정을 한 번에 묶어 실행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하여 승차권을 확보한 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를

판매하고 남은 승차권을 환불하는 방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2023년 기준 악성환불자 5,542명이 27만 건, 119억 7,000만원의 승차권을 발매하였음(1인당 49건, 216만원).

코레일, SR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불법거래 게시물 모니터링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명절 기간 불법거래 삭제·삭제요청건수는 2021년 31건에서 2022년 148건, 2023년 933건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음.

【 온라인 매체 불법거래 삭제·삭제요청 건수(설, 추석기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9
합계	13	31	148 (136)	933 (933)	771 (771)
코레일	13 (13)	31 (30)	40 (36)	72 (72)	176 (176)
SR	—	—	108 (100)	861 (861)	595 (595)

*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철도승차권 부정판매 게시물 모니터링 및 삭제 현황

※ 자료: 국토교통부

이처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철도 승차권 부정판매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나, 2024년 9월 말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1건도 없음. 이는 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매체 관리자 등 불법거래 당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 부터 해당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²⁾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①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³⁾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예외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⁴⁾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두고 있음.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인정보 보호법」

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에 따르면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을 경우 온라인 매체 관리자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국토교통부에게 제공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

현재까지 이루어진 단속의 경우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규모로 승차권을 부정하게 판매한 경우 등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 「형법」 제314조5)에 따른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수사의뢰 후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음. 다만, 이러한 단속은 업무방해죄의 요건이 성립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임.

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하 생략)

5)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코레일·SR 승차권 부정판매 관련 업무방해죄 적용 사례 및 통계 】

코레일	2019년부터 부정판매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등 노력을 통해 1건 적발·조치 :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만원 부과(2020.9월) -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20년 추석 명절승차권을 분당 최대 1,606회 조회하여 좌석을 부당확보(599석)
SR	최근 5년 간 발매·반환이 가장 많은 악성환불자 1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 진행 중(서울중앙지방법경찰청 송치 2023.1.30) - 해당 악성환불자는 최근 5년(2018년~)승차권 25,009매 구매 후 그 중 25,008매 (99.9%)환불 (해당 회원은 강제 탈퇴 처리) - 승차권 다량 구매 및 환불로 국민의 승차권 구매 이용기회를 박탈하는 악성환불자에 대해 <u>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에 따라 수사진행</u>

(단위 :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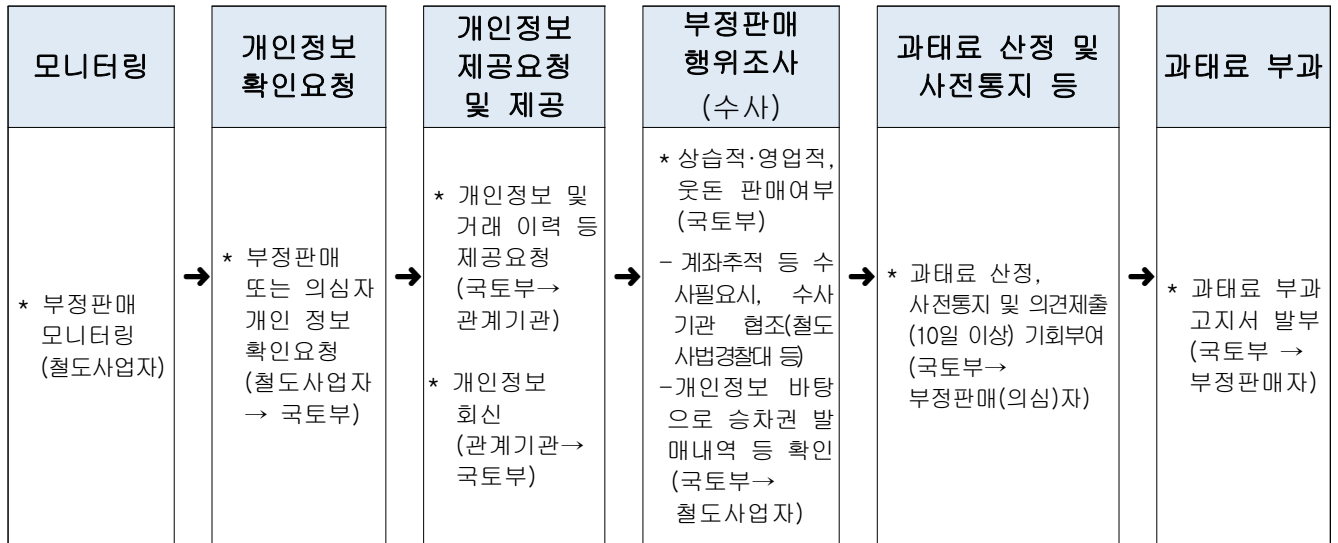
구 분	수사의뢰	고발건수	관련기관
2020년	0	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2021년	0	0	
2022년	0	0	
2023년	7	0	서울수서경찰서
2024년 9월	10	0	서울수서경찰서, 경북경찰청
합계	17	1	

※ 자료 : 국토교통부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 조항과 과태료 부과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 판매자 또는 의심자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근거를 법률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불법매크로를 통한 악성 환불자 문제의 심각성,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개정안에 따를 때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부정판매자·의심자에 대한 개인정보 확인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부정판매 단속이 체계적·실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 적용에 따른 부정판매 단속 절차 】



※ 자료 : 국토교통부

다만, 개정안 취지의 효과적 구현을 위하여 일부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현행법 제10조의2에서 승차권 등의 부정판매가 금지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임. 여기서 “자(者)”는 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 제47조의2제1항에서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닌 “자(者)”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법제처의 「알법」에서도 ‘자’가 ‘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으로 바꾸지 않고 ‘자’를 그대로 쓰도록 함.⁶⁾

6)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열 번째 판, 증보판)」, p.76

둘째, 안 제47조의2제3항에서는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하도록 규율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⁷⁾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항과 같은 규율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제공자와,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는데, 다른 입법례와 비교할 때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여러 입법례에서 정보제공자를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으로 열거하고 제공 정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바 있음.

국토교통부는 위반자 단속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승차권 구매이력 등으로 보완하며 정보제공자를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으로 열거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인정보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참고 입법례 】

법률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법률	내용
「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⑩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제177조에서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0항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정보와 제11항에 따라 제공받는 질병에 관한 통계 이용의 범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89조(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0항 및 제13항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2. 교통법규의 위반일시 및 위반 항목 3.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4. 운전면허의 범위, 정지·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취소일

3) 관계 부처 등 의견

(국토교통부)

철도승차권 부정판매자 조사를 위해 정보 요청 권한 신설 및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범위(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승차권 구매이력 등)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도 규정이 불필요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문진석)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 위반자 조사를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무 위반자 조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보제공자 및 정보유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수정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10. 부대의견

해당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 의무 위반자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 및 제공 정보유형을 구체화하고 개정안의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7조의2제1항 중 “금지”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 개인에게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로,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의”를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을 “자는”으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승차권 구매이력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신 설></u>	<u>제47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제10조 의2에 따른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 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에 대한 조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 체에 필요한 정보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	제47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 ----- ----- -----금지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 치단체의 장,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의 장, 법인·단체 의 장, 개인에게 승차권 등 부정판 매 금지----- ----- ----- ----- ----자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정보-- ----- ---

	<u><신 설></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승차권 구매이력 ② ----- ----- ----자는-----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삭 제></u>
--	---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 개인에게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승차권 구매이력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7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u>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2에</u> <u>따른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u> <u>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u> <u>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u> <u>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u> <u>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u> <u>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u> <u>개인에게 승차권 등 부정판매</u> <u>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u> <u>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u> <u>이유가 있는 자에 관한 다음</u> <u>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u> <u>수 있다.</u> <u>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u> <u>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u> <u>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u> <u>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u> <u>사항</u> <u>2. 승차권 구매이력</u> <u>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u> <u>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u> <u>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